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97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서지영·박수민·김대식

박충권 • 이인선 • 김성원

이헌승 • 곽규택 • 정동만

김희정 · 서천호 · 정성국

유영석 · 김용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영상 보도 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이에 2023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현행법에 언론이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동 제도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9(아동학대보도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이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9조의9(아동학대보도 실태조
	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
	<u>• 신문 • 잡지 및 인터넷신문</u>
	등 언론이 제29조의8제1항에
	<u>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u>
	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u>하여야 한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u>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u>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
	<u>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